

전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나3086 판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매매예약취소 등]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나3086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 28 선고 2018가단5108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피고, 항소인1. D

2. 유한회사 G

3.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영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희상

변론 종결2021. 11. 18.

판결 선고2022. 1. 27.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 28. 선고 2018가단5108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소외 N와, 제1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사이에 2016. 9.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7.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제1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 G와 사이에 2016. 9.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I와 사이에 2017.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제1심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 G와 사이에 2016. 9.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제1심 공동피고 J와 사이에 2017. 6.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D은 12,500,000원, 피고 유한회사 G, I는 공동하여 12,500,000원, 피고 유한회사 G, 제1심 공동피고 J는 공동하여 1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D, 유한회사 G, I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D, 유한회사 G, I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해당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합계 1억 8,900만 원'을 '합계 1억 8,91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전주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빌라	1,973,000,000
제1심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35,297,000
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71,863,200
위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57,881,600
위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68,005,600
임대차보증금1) 전주시 완산구 AN빌딩 Q동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0,000
합계	2,256,047,400
소극재산	가액(원) 기준 시점 2016. 9. 19.
Z조합	1,045,000,000
AA조합	75,000,000
AB	100,000,000
AC(주)2) 김제시 P외 2필지 AO건물 Q동 제4층 X호 AC 주식회사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0
AM3) 김제시 P외 2필지 AO건물 Q동 제5층 Y호 AM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40,000,000
AC(주)4) 김제시 P외 2필지 AO건물 Q동 제5층 AP호 AC 주식회사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20,000,000
원고	198,400,000
(유)AD	300,000,000
AE	22,000,000
(유)AF	11,889,368
(유)G	62,256,200
AG	29,369,000
B	46,090,000
L	47,682,635
I	144,922,800
합계	2,342,610,003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N로부터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대금 및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6. 3. 24. 및 2016. 9. 5. N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으며, N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위 가압류를 각 해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N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N가 2016. 9. 19.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9. 19.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채무자인 N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가액배상 액수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AQ, AR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723호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매매예약취소 등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20. 10. 20.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이와 같은 관련소송의 결과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가액배상의 액수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 포함)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련소송이 확정되어 원고가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관련소송의 결과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곽지영

별지